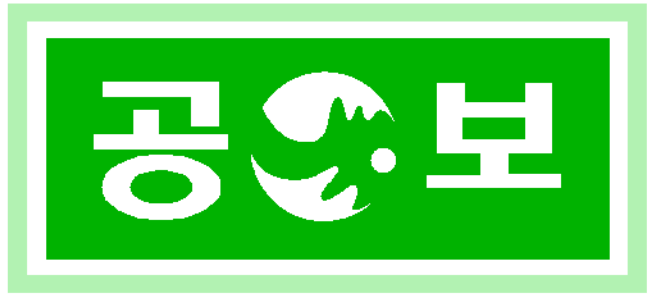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구 관	기 관 의 장



제 688 호 2011. 4. 18(월)

고 시

○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1-33호[특정관리대상시설(지역)의 지정(해제) 고시] 2

공 고
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250호[임대조건 신고내용 공고] 3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272호[공인 등록 공고] 5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273호[울산광역시 북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] 6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278호[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] 8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문화홍보과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11 - 33호

특정관리대상시설(지역)의 지정(해제) 고시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(해제)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1년 4월 18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□ 특정관리대상시설(지역) 지정(해제) 조서

시설명	대상시설(지역)		지정(해제)사유	지정 등급	안전점검·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 고
	소재지	소유자 (관리시)				
매곡교	북구 매곡동 795-1	북구청 건설과	진입도로 신설에 따른 교량철거	B	-	해 제
일코타운 아파트 (건축공사장)	신천동 605호 185	(주)엠코	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되어 해제	A	-	해 제
고려화학사택 2차아파트 (2개동)	염포동 370	고려화학	일제조사 신규시정	B	-	신 규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250호

임대조건 신고내용 공고

「임대주택법」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대조건 신고내용을 공고합니다.

2011년 4월 18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임대 사업자	상 호	대한주택공사 울산·경남지역본부		전화번호 052)256-4840	
	주 소	부산광역시 북구 초량동 1199-1			
임대 주택	주 택 명	울산명촌주공			
	주 택 소 개 시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구획정리지구 115B 1L			
	주 택 유 형	이체트			
	주 택 중 류	국민임대주택			
임대 조건	세 대 수	표준임대조건		준환임대조건	
	선용년적 세대	임대보증금	임대료(월)	임대보증금	임대료(월)
	51.49㎡ 174	13,351,000원	175,840원	22,331,000원	113,840원
	51.95㎡ 360	13,450,000원	175,540원	22,450,000원	115,540원
	합계 534				
	임대기간	2011.06.01 ~ 2013.05.31			
신고일자	2011.04.08				

인 내 주 택	주 택 명		화봉1수공			
	주 택 소 지 지		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338번지			
	주 택 우 형		아파트			
	주 택 종 류		국민임대주택			
임 대 조	세 대 수		표준임대조기			
	전용면적	세터	임대보증금		임대료(월)	
	46.90㎡	324	20,780,000원	155,850원	31,780,000원	82,520원
	51.93㎡	170	24,936,000원	207,800원	39,936,000원	107,800원
	합계	494				
	임 대 기 기		2011.06.01 ~ 2013.05.31			
	신 고 일 자		2011.04.08			
임 대 주 내	주 택 명		화봉2주공			
	주 택 소 지 지		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40번지			
	주 택 우 형		아파트			
	주 택 종 류		국민임대주택			
임 대 조	세 대 수		표준임대조기		진화임대조기	
	전용면적	세터	임대보증금	임대료(월)	임대보증금	임대료(월)
	46.90㎡	566	20,780,000원	155,850원	31,780,000원	82,520원
	51.93㎡	187	24,936,000원	207,800원	39,936,000원	107,800원
	합계	753				
	임 대 기 간		2011.06.01 ~ 2013.05.31			
	신 고 일 자		2011.04.08		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1-272호

공 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공인 조례」 제6조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「울산광역시 복구 공인 조례」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11년 4월 18일

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



□ 신규공인 최초사용 가능일 : 2011년 4월 18일

□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

공 인 명	규격(cm)	서 체	인 영
(민원사무전용) 울산광역시복구청상인	2.4 × 2.4	한글전서체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1-273호

**울산광역시 복구 제안서 평가위원회
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**

「울산광역시 복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은
안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
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1년 04 월 1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
2010. 10. 26. 개정되어 본 규칙을 일부 개정

2. 주요내용

- **제명 변경**
 - 울산광역시 복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
- **위원 자격 변경 (안 제2조 제1항 제1호)**
 - 3년 이상 근무성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
- **위원장 선출방법 변경 등 (안 제3조 제1항)**
 -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
 - 제안서 평가에도 참여 가능
- **평가위원 추가추천 인원 확대 (안 제3조 제4항)**
 -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분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추천인원을 15 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

3. 개정규칙인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홈페이지 게시

4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0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회계정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일별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의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·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번지(연암동 1004-1번지)
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정보과

※ 기타사항 문의 : 전화 052-219-7242, 팩스 052- 219-7249

5. 기 타

개정규칙안의 신문은 우리구 회계정보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지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1 - 278호

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4월 18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**「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
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
제정조례 안 입법예고**

1. 개정이유

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·지정절차에 등에 관한 사항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36조에 근거한 유통업분생조정위원회를 규정하여 지역 유통산업발전 도모

2. 주요내용

가.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

○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6조, 인 제7조)

나. 유통분생조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

○ 위원회의 설치·기능·구성·운영, 분정의신청 및 거부(안 제8조~제13조)

다.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

○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방법·절차(안 제14조)

라.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

○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등 등록절차·제한(안 제16조)

○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등 등록시 조건등 부과(안 제17조)

3. 근거법규

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제3항, 제13조의3제2항, 제36조제7항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-경제진흥과, 전화 219-7462, 팩스 219-746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 사항 등

5. 기 타

「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내리모·준내리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인의 전문은 우리구 경제진흥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